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기한** : 2018. 4. 20.(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문의** : (도) 농업기반과 249-3556 (시·군) 농정과·농업기술센터 식량담당 부서

사업대상

- '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를 재배한 농지
- '16년 논에 벼를 재배한 농지로 '17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은 농지

신청대상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는 과잉재배시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정부에서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최소 신청면적은 300평(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 없음
- 작물별 지원단가(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꽃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콩·녹두·팥 등)
280만원

전체
(평균)
340만원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꽃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두류 콩, 팥, 녹두 등

꽃거름작물 꽃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18년 11월중 지원금 지급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 활성화’ 방안

신청 저조...강력 유인책 내놔 지자체 인센티브도 강화 신청기한 4월20일까지로 연장
농경연 “5만ha 감축 가정...콩 재배 때 1ha당 소득, 벼보다 33.5% 더 높을 것”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다. 또 28일까지였던 생산조정제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22일 현재 3599ha로 목표(5만ha) 대비 7.2%에 머물러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당초 생산조정제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곳으로 한정돼 있었다. 지난해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변동직불금 수령 여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신청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2017년에 벼를 재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2017년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면적은 7만ha가 넘는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경우 신규면적(1000㎡·303평 이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난해 자발적인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올해 생산조정제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생산조정제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때 생산조정제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될 타작물의 수급안정 방안도 보강했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t(2017년 3만t)으로 늘리고, 수확기에 필요하면 5000t을 추가로 수매한다. 수매가격도 지난해(1kg당 4011원·대립 1등급 기준)보다 2.2% 인상한 4100원으로 결정했다. 콩 가공·유통 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 또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당초 28일까지였던 생산조정제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로 늘리고, 기존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 지원 제외 품목은 무·배추·고추·대파 등 4개가 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생산조정제는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의 소득이 벼를 재배할 때의 소득보다 많았다. 논에 콩을 심었을 경우 1ha당 소득은 1059만1000원으로 벼 재배소득(793만6000원)보다 33.5%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인 5만ha를 모두 감축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으로, 목표면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쌀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서론 기자 seolyoon@nongmin.com



변동직불금 못 받았더라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 가능”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 활성화’ 방안
신청 저조...강력 유인책 내놔 지자체 인센티브도 강화 신청기한 4월20일까지로 연장
농경연 “5만ha 감축 가정...콩 재배 때 1ha당 소득, 벼보다 33.5% 더 높을 것”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는다. 또 28일까지였던 생산조정제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22일 현재 3599ha로 목표(5만ha) 대비 7.2%에 머물러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당초 생산조정제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곳으로 한정돼 있었다. 지난해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변동직불금 수령 여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신청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2017년에 벼를 재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2017년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면적은 7만ha가 넘는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경우 신규면적(1000㎡·303평 이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난해 자발적인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올해 생산조정제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생산조정제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때 생산조정제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될 타작물의 수급안정 방안도 보강했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t(2017년 3만t)으로 늘리고, 수확기에 필요하면 5000t을 추가로 수매한다. 수매가격도 지난해(1kg당 4011원·대립 1등급 기준)보다 2.2% 인상한 4100원으로 결정했다. 콩 가공·유통 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 또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당초 28일까지였던 생산조정제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로 늘리고, 기존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을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 지원 제외 품목은 무·배추·고추·대파 등 4개가 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생산조정제는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의 소득이 벼를 재배할 때의 소득보다 많았다. 논에 콩을 심었을 경우 1ha당 소득은 1059만1000원으로 벼 재배소득(793만6000원)보다 33.5%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인 5만ha를 모두 감축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으로, 목표면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쌀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